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678
----------	------

제안년월일: 2025년 4월 17일
발의자: 도시계획균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상욱 의원이 2025년 3월 28일 발의한 의안번호 2507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2025년 3월 31일 제출한 의안번호 265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2025.4.17.)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옥외광고물 중 하나인 현수막과 관련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간판에 사용되는 색채로 적색류와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현행조례 제2조제3항4호)
- 입간판 재료를 '비철(非鐵)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변경 (안 제9조의2 제1항제6호)
- 공공시설물 광고물 중 가로영상문화시설 단서 조항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안 제10조제1항제2호)
-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선착장' 추가 (안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하여 일반적인 표시방법으로 소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 조례 위임 사항이 아닌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조항 삭제 (현행조례 제11조의2)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기준에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에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안 제12조제2항제3호)
- 창문을 이용한 전광류(동영상 변화가 없는) 사용 광고물을 '상업지역 건물 1층'으로 제한한 규정 삭제(현행조례 제17조제2항2호)
-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기준 완화를 위한 '시범사업' 조항 추가(안 제17조제4항)
- 시장이 수립하는 지원계획의 내용으로 광고물등의 친환경 소재 사용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 시장 및 구청장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안 제30조2제1항 신설)
-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30조2제2항 신설)
-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의 공로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30조2제3항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제8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중 “제17조제2항제2호”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종료시에”를 “종료 시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단서 중 “디지털 광고물”을 “디지털광고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연립형 간판”을 “연립형간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6호 중 “비철(非鐵)금속”을 “금속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시
육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
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별표 1의 공원
이용시설 중 제1호가목 내 선착장(「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
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리버버스를 위한 선착
장에 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재는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
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
적 소재(이하 “친환경 소재”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호 제4호”를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단서 중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1조제1항제3호”를 “제11조제1항제4호”로 한다.

가.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2항제1호 중 “. 건물”을 “건물”로,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을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각각의”로, “이내로서”를 “이내로 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옥외광고사업자 단체 또는 자치구 등으로부터 창문 이용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천·종이·비닐 등 유연성 원단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최대 4분의 1 이내로 한다.
2.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최대 1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건물의 벽면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 이용 간판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규격은 세로는 4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가로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 하고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고물등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시장 및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 및 사용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3.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
4.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에 관련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제6호·제7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 3. (생략) 4. 제6조에 따른 공연간판 5. ~ 10. (생략) ③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의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광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제8항-----.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 5. ~ 10. (현행과 같음) ③ ----- -----, 1. ----- ----- ----- ----- ----- -----.		

현행	개정안
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생략) 나.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또는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설비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에 한정하여 자정까지 할 수 있다. 가. ~ 다. (생략) 4. <u>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과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5. (생략) ④·⑤ (생략)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17조----- ----- 2. (현행과 같음) 3. ----- ----- ----- -----종료 시에-----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 -----

현행	개정안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간판이「건축법」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창문(열고 닫는 기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과 <u>디지털 광고물</u>은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8.·9. (생략) ② ~ ④ (생략)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제2조제5항에 따른 <u>연립형 간판</u> 게시시설의 세로길이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물의 5층 이하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영 제3조제6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료”란 <u>비철(非鐵) 금속</u>을 말한다.	---. 1. ~ 6. (현행과 같음) 7. ----- ----- ----- ----- ----- ----- ----- ----- ----- ----- ----- <u>디지털광고물</u> ----- -----. 8.·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u>연립형간판</u> ----- ----- ----- -----.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u>금속 등</u> -----.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영 제29조제3항제6호 광고물은 제외), 횡단보도 쉼터, 가로 영상문화시설(<u>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u>) 3.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u><신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 -----(<u>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u>) 3. ~ 5. (현행과 같음) 6. <u>「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별표 1의 공원이용시설 중 제1호가목 내 선착장(「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리버버스를 위한 선착장에 한정한다)</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소재는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u>

현행	개정안
② ~ ⑤ (생략) <u>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u> <u>법 제5조, 제8조 제1항 제8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u> <u>1. 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하되,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영 제35조의2에서 정한 장소에는 표시·설치가 제한된다.</u> <u>2. 정당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이는 제1호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u> <u>3. 영 제35조의2 각호의 표시사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가로·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u> <u>4.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된다.</u> ②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처분행정	<u>소재(이하 "친환경 소재"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청은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다.</u> 제11조의3(집회현수막) 단체나 개인이 법 제8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2. (생략)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 기준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일한 지정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u>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신설> <신설> <신설> 4. 5. (생략) 6.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11조의3(집회현수막) -----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제4호 ----- -----. 1. 2. (현행과 같음)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가. <u>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u> 나. <u>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u> 다.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4. 5. (현행과 같음) 6. ----- 제11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거를 하지 않은 현수막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생략)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 ----- ----- ----- -----.
1. <u>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u>	1. <u>건물</u> ----- ----- <u>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각각의</u> ----- ----- <u>이내로 하고 최대 1제곱미터</u> 이하여야 한다.
2. <u>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 또는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u>	<삭 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u>시장은 옥외광고사업자 단체 또는 자치구 등으로부터 창문 이용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u>

현행	개정안
④ (생략) 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u>도록 할 수 있다.</u> <u>1. 천·종이·비닐 등 유연성 원단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최대 4분의 1 이내로 한다.</u> <u>2.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최대 1제곱미터 이하로 한다.</u> <u>3. 건물의 벽면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 이용 간판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u> <u>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u> <u>나. 규격은 세로는 4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가로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 하고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 ----- -. 1. 2. (현행과 같음) <u>3. 광고물등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② ~ ⑤ (생략) <u><신설></u>	② ~ ⑤ (현행과 같음) <u>제30조의2(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u> <u>시장 및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 및 사용</u> <u>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u> <u>3.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u> <u>4.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에 관련한 교육·홍보 사업</u> <u>5. 그 밖에 시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②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u>③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u>